

상속과 증여에 대한 세부담 격차 연구*

강 성 훈** · 오 종 현***

논문초록 본 연구는 동일한 이전자산가액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상속과 증여의 세부담 격차가 주요국과 비교하여 어느 정도 수준인지 모의실험을 통해 분석한다. 모의실험 분석에서 자산이전 기간(일시적, 지속적)을 고려하고 과세방식, 세율체계, 공제제도, 증여재산 합산과 세제도가 세부담에 종합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다. 분석 결과는 일시적 자산이전의 경우 일본과 한국의 증여세 부담이 상속세와 비교하여 상당히 높은 반면 다른 주요국은 두 가지 세부담이 유사함을 보여준다. 하지만, 지속적 자산이전을 고려할 경우 일본의 증여세 부담이 크게 낮아졌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주요국과 비교하여 우리나라에서 증여는 상속보다 세부담 측면에서 불리하게 설계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효율성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향후 상속과 증여의 세부담이 서로 유사해지도록 상속세와 증여세의 과세방식과 공제제도의 개편이 필요하다.

핵심 주제어: 상속세, 증여세, 상속과 증여의 세부담 격차, 모의실험 분석

JEL 주제분류: H20, H21

I. 서론

상속세는 존재 논의가 가장 활발한 세목이다. 상속세 반대론자는 세후소득으로 형성한 자산에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은 피상속인의 관점에서 이중과세이며 이

논문투고일: 2020. 9. 4. 심사완료일: 2020. 12. 22. 게재확정일: 2021. 2. 17.

* 본 연구는 강성훈(2017)을 보다 발전시켜 재작성한 것임을 밝힌다. 또한, 이 논문은 한양대학교 교내연구지원사업으로 연구되었다(HY-2018년도).

** 제1저자, 한양대학교 정책학과 조교수, e-mail: shkang7@hanyang.ac.kr

*** 교신저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e-mail: jhoh@kipf.re.kr

는 결국 경제의 활력을 저해한다고 주장한다.¹⁾ 이 주장을 근거로 그들은 상속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정유석, 2009). 상속세 찬성론자는 부모세대의 부(wealth)가 자녀세대로 이전될 때 상속세가 없다면 자녀의 노력없이 부가 쉽게 축적되고 이는 결국 자산 불평등을 상당히 악화시킬 수 있음을 지적한다. 따라서 그들은 자산 불평등을 개선하고 기회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상속세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²⁾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고려할 때 상속세 폐지는 아직 시기상조이다. 금융재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범위가 부동산과 비교하여 작으므로, 상속세를 폐지하고 양도소득세를 적용할 경우 세 부담 회피를 위해 금융자산의 형태로 자산이전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모든 형태의 자산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제대로 부과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상속세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

한편, 상속세만 존재할 경우 생전에 자산을 이전하여 상속세 부담을 회피할 수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상속세는 증여세와 함께 과세한다. 동일한 이전자산가액에 대해 상속세와 증여세 부담이 무차별하다면 상속·증여세가 자산이전 시점에 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하지만 이전자산가액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상속세와 증여세 부담 간 격차가 존재한다면, 상속·증여세는 자산이전의 사결정을 왜곡하며, 이는 결국 사회적 후생(social welfare)을 감소시킨다.

한국은 상속세와 증여세가 동일한 세율체계를 가지지만, 과세방식과 공제제도가 서로 상이하여 이전자산가액이 동일하더라도 상속과 증여의 세 부담 또한 다르다. 과세방식에 있어 상속세는 유산세 방식으로 과세하지만, 증여세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과세한다. 과세방식만 본다면 자녀수가 많을수록 증여가 세 부담 관점에서 상속보다 더 유리하다. 하지만, 상속의 경우 5억원의 일괄공제가 존재하는 반면,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에는 상속과 같은 일괄공제 없이 10년간 5천만원의 공제만 적용된다. 또한 증여공제는 모든 직계존속을 동일인으로 간주한다는 점도 증여공제 규모를 제한하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공제제도의 차이로 인

1) 피상속인은 상속재산을 이전하는 주체를 의미하며 상속인은 상속재산을 이전받는 사람을 의미한다.

2) 보다 자세한 상속과세 존재론 논쟁은 김병일(2017)을 참조하기 바란다.

하여 세부담을 고려할 때 증여가 상속보다 불리하다. 특히, 현행 제도 하에서는 자녀수가 적을수록 공제제도의 차이로 인한 상속과 증여의 세부담 격차가 더 부각될 것이다. 유정균·김두섭(2018)에 따르면, 최근 한국 기혼여성의 평균 현재 자녀수는 감소하고 있다. 2000년대에는 자녀수 감소속도가 느려졌으나, 평균 2명 이하로 유지되고 있다. 이와 같은 경제사회여건 하에서는 자산이전에 있어 증여가 상속보다 더 불리할 수 있다.

상속·증여세제가 자산이전 시점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상속과 증여의 세부담 격차가 지나치게 큰 것은 조세의 효율성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나라의 실증분석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상속과 증여에 대한 상대적 세부담 차이에 따라 자산이전 시점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박용일(1999)은 24년간의 연간자료를 사용하여 회귀분석을 통해 상대적으로 증여공제가 증가할수록, 누적합산대상 증여가액이 감소할수록 증여가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김진(2005)은 30년간의 자료를 사용하여 증여세수의 장기 탄력성은 15.5, 그리고 단기 탄력성은 5.6으로 추정하여, 증여세수가 증여가격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을 보여주었다. 또한, 김진(2005)은 상대적 증여공제비율의 증가가 상대적 증여비율의 증가와 관련 있음을 보여주었다. 오종현 외(2016)는 기존 연구들의 연간자료를 50년간의 연간자료로 업데이트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증여세의 한계세율 증가는 증여재산가액의 감소와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와 같은 기존 연구결과들에 기초한다면, 현행 상속·증여세가 증여의 유인을 감소시키고 이는 고령자의 자산 집중 현상을 심화시킬 것으로 판단된다. 조세효율성 관점에서는 상속과 증여의 세부담이 유사한 것이 바람직하다.

본 연구는 동일한 이전자산가액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상속과 증여의 세부담 격차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분석한다. 이를 위해서는 자산이전 기간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산이전은 한 시점에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으나, 오랜 기간에 걸쳐 이뤄지기도 한다. 예컨대, 부모는 일시적으로 자녀의 전세금 또는 주택구매자금을 지원해줄 수 있다. 또한, 부모는 생활비 명목으로 자녀에게 일정 금액을 정기적으로 증여할 수 있다. 상속·증여세의 과세방식, 세율체계, 공제제도, 증여재산 합산과세제도는 세부담에 종합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만

약 일시적 자산이전만 고려한다면, 증여재산 합산과세제도 및 지속적 증여에 대한 공제제도가 세부담에 반영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상속과 증여의 세부담 격차를 정확하게 추정하기 위해서는 지속적 자산이전 상황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자산이전 기간을 (1) 일시적 자산이전과 (2) 지속적 자산이전으로 구분하여 상속과 증여의 세부담 격차를 추정한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상속과 증여에 대한 세부담 격차를 주요 선진국과 비교·분석한다. 주요 선진국으로는 OECD 회원국 중 상속·증여세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을 고려한다. 이는 다른 주요국은 상속·증여세가 어떻게 설계되어 있는지, 그리고 우리나라의 상속과 증여의 세부담 격차 수준이 주요국과 비교하여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가늠하게 해준다. 본 연구의 가장 큰 기여점은 기존 연구들과 달리 다양한 자산이전 상황을 고려하여 상속·증여세의 실질 세부담을 추정한다는 것이다. 기존 연구들은 대체로 우리나라의 상속·증여세 세율체계 및 공제제도를 주요국의 경우와 단순 비교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다(김광현, 2001; 한상국, 2013; 서정우, 2018). 하지만, 상속과 증여에 대한 실질적인 세부담은 상속·증여세의 과세방식, 세율체계, 공제제도, 증여재산 합산과세제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결정되기 때문에, 각각에 대한 부분적인 비교는 전체적인 세부담 수준을 비교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자산이전 상황에 대한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국가·시나리오별로 모의실험 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상속세와 증여세의 실효세율(=산출세액/이전자산가액)을 추정하고 그 결과를 활용하여 세부담 격차를 분석한다.

이하에서는 다음의 순서로 논의한다. 제Ⅱ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상속세 및 증여세의 특징에 대해 설명하고, 제Ⅲ장에서는 주요국의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 체계에 대해 설명한다. 제Ⅳ장에서는 상속과 증여의 세부담 격차에 대해 분석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Ⅴ장에서는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II. 우리나라의 상속세 및 증여세의 특징

본 연구는 세부담에 영향을 주는 (1) 과세방식, (2) 세율체계, (3) 공제제도, (4) 증여재산 합산과세제도로 구분하여 상속·증여세 특징을 설명한다.

1. 상속세

상속세 과세방식은 과세 대상에 따라 유산세 방식과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구분된다. 유산세는 피상속인에게, 유산취득세는 상속인에게 과세하는 방식이다. 유산세 방식은 피상속인에게 과세하기 때문에 피상속인이 남긴 총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액이 계산되고 이렇게 계산된 상속세액을 상속인들이 공동 부담한다. 반면 유산취득세 방식은 총 상속재산을 상속인에게 분할한 후 각 상속인에게 분할된 상속재산 각각에 대하여 상속세액이 계산된다. 만약 상속인이 1명이라면 두 방식 간의 세부담에 차이가 없다. 하지만, 상속세가 초과누진세제이기 때문에 상속인이 2명 이상이라면 유산세보다 유산취득세가 세부담 측면에서 유리하다.

유산세와 유산취득세의 차이를 간단한 예를 통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부모 1명이 자녀 2명 또는 4명에게 20억원의 자산을 상속한다고 가정하자. 총 부담세액은 <표 2>의 현행 세율체계를 적용하여 산출하되, 논의의 편의를 위해 다른 공제제도는 고려하지 않는다. 유산세 방식의 경우 자녀수에 상관없이 총 부담세액은 6억 4천만원으로 산출된다. 반면, 유산취득세 방식의 경우 <표 1>에 제시된 것처럼, 총 부담세액이 유산세 방식의 경우보다 낮고 자녀수가 증가할수록 총 부담세액이 감소한다.

<표 1> 유산세 방식과 유산취득세 방식에 따른 세부담 비교 1

과세방식	유산세 방식		유산취득세 방식	
	자녀 2명인 경우	자녀 4명인 경우	자녀 2명인 경우	자녀 4명인 경우
상속인				
각 자녀에게 이전된 자산	10억원	5억원	10억원	5억원
각 자녀들에 대한 부담세액	3억 2천만원	1억 6천만원	2억 4천만원	9천만원
총 부담세액	6억 4천만원	6억 4천만원	4억 8천만원	3억 6천만원

자료: 저자 작성.

우리나라 세율체계는 5단계 초과누진세율 구조를 가진다. 최저세율은 10%이고 최고세율은 50%이다. 최저세율을 적용받는 과세표준 임계점은 1억원이고 최고세율의 경우에는 30억원이다. 국세통계연보에 제시된 과세유형별 상속세 신고 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 기준으로 전체 피상속인 중 약 3%만 상속세를 부담하였다. 이는 상속세가 고자산가를 중심으로 상당히 누진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상속세 최고 법정세율은 50%이지만, 동일한 과세표준 구간의 실효세율은 약 28%로 그 격차가 22%p로 나타난다. 이는 공제제도 등으로 인해 법정 세부담과 실제 세부담 간의 차이가 발생함을 보여준다. 따라서 세부담 분석을 위해서는 과세체계뿐만 아니라 공제제도 등이 반영된 실효세율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표 2〉 상속·증여세 세율체계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억원 이하	10%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0%	1천만원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30%	6천만원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40%	1억 6천만원
30억원 초과	50%	4억 6천만원

자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표 3〉은 우리나라의 상속세 공제제도를 간략하게 보여준다. 상속세는 일괄공제제도를 운영한다. 일괄공제제도란 배우자 외 상속인이 존재할 경우 〈표 3〉에서 공제 ①에 해당되는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계액이 5억원보다 작다면, 공제 ①을 적용하지 않고 공제 ②를 적용하여 배우자 외 상속인에 대하여 총 5억원을 공제하는 제도이다. 배우자공제의 최소액이 5억원이기 때문에 재산이 배우자와 자녀에게 상속될 경우 최소한 10억원의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즉, 이 경우 상속세는 상속재산이 10억원을 초과해야만 상속세가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3〉 상속세의 주요 공제제도

구분		공제액	
배우자공제		법정상속지분 내 실제 상속가액과 5억원 중 큰 금액(30억원 한도)	
공제 ①	기초공제	2억원	
	인적공제	자녀공제	1인당 5,000만원
		미성년자공제	1천만원 × 19세까지의 잔여연수
		연로자공제	1인당 5,000만원
		장애자공제	1천만원 × 기대여명1)의 연수
공제 ②	일괄공제	5억원	
공제 적용 금액		(배우자공제) + ((공제 ①)과 (공제 ②) 중 큰 금액)	

주: 2010년 12월 27일부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조 제1항 제4호 중 “75세까지의 잔여연수”를 통계청장이 승인·고시하는 통계표에 따른 “성별·연령별 기대여명의 연수”로 함.
 자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1조.

우리나라는 증여재산 합산기간을 10년으로 설정한다. 이는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에는 상속시점을 기준으로 10년 이내 이루어진 증여재산을 포함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10년 이내 증여재산은 상속재산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예컨대, 만약 2019년에 사망한 경우 2009년 이후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하지만, 그 이전에 증여한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또한,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납부한 증여세액은 상속세액에서 공제한다.

그 밖에도 금융재산상속공제, 재해손실공제, 동거주택상속공제 등이 있으며, 법정신고기한 내에 상속세 신고를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상속세 신고세액공제 제도가 있다. 다만, 국세청의 과세인프라 확충으로 세원포착 문제가 완화되면서 정부는 신고세액공제 혜택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하고 있다.

2. 증여세

증여세는 〈표 2〉에 제시된 것처럼 상속세와 동일한 세율체계를 가진다. 하지만, 증여세 과세방식은 상속세와 달리 유산취득세 방식을 따른다. 따라서 동일한 증여가액이라도 많은 수증자에게 증여할수록 전체적인 증여세 부담은 감소한

다. 3) 하지만 증여의 경우 상속과 달리 직계존속인 아버지와 어머니를 모두 동일인으로 간주한다. 이로 인해 동일한 이전자산가액이라도 유산세 방식인 상속세 부담이 유산취득세 방식인 증여세 부담보다 더 작을 수 있다. 다음의 예를 살펴보자. 아버지와 어머니가 자녀 1명에게 각각 5억원을 이전하였다고 하자. 이때, 논의의 편의를 위해 공제제도를 고려하지 않는다. 유산세 방식의 경우 아버지가 자녀에게 이전한 5억원에 대해 9천만원 세부담이 발생하고 어머니가 이전한 자산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9천만원 세부담이 발생한다. 따라서 자산이전으로 발생한 총 부담세액은 1억 8천만원이 된다. 유산취득세 방식의 경우, 아버지와 어머니를 동일인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아버지와 어머니가 자녀에게 이전한 10억원에 대해 2억 4천만원이라는 총 부담세액이 산출된다. 이런 특징은 상속세와 증여세 부담의 격차가 발생하는데 기여한다.

〈표 4〉 유산세 방식과 유산취득세 방식에 따른 세부담 비교 II

과세방식	유산세 방식		유산취득세 방식	
피상속인 또는 증여자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
자녀에게 이전된 자산	5억원	5억원	5억원	5억원
자녀의 부담세액	9천만원	9천만원	-	
자녀의 총 부담세액	1억 8천만원		2억 4천만원	

자료: 저자 작성.

증여공제는 상속공제와 유사하게 배우자공제, 직계존비속공제, 기타친족공제로 구분할 수 있으며, 증여자와 친족관계가 가까울수록 공제금액이 크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직계존속에 해당하는 증여자들을 모두 동일인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여러 명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라도 증여공제액은 5천만원만 적용된다. 예컨대, 아버지에게만 증여받은 사람의 공제액은 5천만원이고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증여를 받은 사람의 공제액도 5천만원으로 동일하다. 우리나라의 주요 증여공제제도의 공제액은 다음의 〈표 5〉에 제시된 바와 같다. 이때, 수증자

3) 증여자는 증여재산을 이전하는 주체를 의미하며, 수증자는 증여재산을 이전받는 사람을 의미한다.

의 증여시점을 기준으로 10년 이내 모든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증여세를 계산하고 공제액을 적용한다. 상속세와 마찬가지로 미리 납부한 증여세는 증여세액에서 공제된다. 한편, 상속세와 달리 증여세에는 일괄공제제도가 없다. 따라서 동일한 재산을 이전할 경우 증여공제 규모가 상속공제의 경우보다 낮게 되며, 이는 세부담 격차로 이어진다. 또한 증여세도 상속세와 마찬가지로 증여세 신고세액 공제 제도가 운용되고 있으나 최근 공제액이 감소하는 방향으로 개편되고 있다.

〈표 5〉 증여세의 주요 공제제도

구분	공제액
배우자공제	6억원
직계존속공제	5천만원
직계비속공제	5천만원
미성년자공제	2천만원
기타친족공제	1천만원

자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Ⅲ. 주요국의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체계

본 연구는 우리나라와 더불어 상속·증여세율이 높고 GDP 대비 상속·증여세 비중이 OECD 평균보다 높은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을 중심으로 세부담을 비교·분석한다. 주요국의 상속·증여세 과세방식, 세율체계, 공제제도, 증여재산 합산기간 등에 대한 정보는 IBFD Tax Knowledge Centre (2020)를 통해 얻었다.

1. 과세방식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우리나라의 상속세와 증여세는 서로 다른 과세방식을 가진다. 즉, 상속세는 유산세 방식을, 그리고 증여세는 유산취득세 방식이다. 이는 다른 주요 선진국들과 비교해 우리나라의 상속·증여세가 갖는 독특한 특징

이다. 우리나라를 제외한 다른 국가들은 상속세와 증여세의 과세방식은 동일하다. 미국은 유산세 방식을 따르며 상속세와 증여세를 별도로 구분하는 것이 아닌 통합된 형태로 운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반면 프랑스, 독일, 일본은 상속세와 증여세 모두 유산취득세 방식을 따른다. 다만, 일본의 상속세는 전반적으로 유산취득세 방식을 따른다고 볼 수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완전한 유산취득세 방식이 아닌 유산세 방식과 유산취득세 방식이 서로 혼합된 방식을 사용한다.

〈표 6〉 OECD 국가별 상속·증여세의 과세방식

국가	과세방식	
	상속세	증여세
한국	유산세	유산취득세
미국	유산세	유산세
독일	유산취득세	유산취득세
프랑스	유산취득세	유산취득세
일본	유산취득세 ¹⁾	유산취득세

주: 1) 일본의 상속세 과세과정은 유산세와 유산취득세 혼합형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함.

자료: IBFD Tax Knowledge Centre (2020).

일본의 상속세 과세과정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이 크게 4단계로 구분된다. 1단계를 보면 기초공제는 총 상속재산에 적용한 후 순 상속재산에 상속인의 법정상속비율로 분배하여 상속세액을 산출한다. 그 다음 상속세액 합계액에 실제 상속받은 재산가액 비율을 적용하여 최종 상속세액을 산출한다. 따라서 1단계는 유산세 방식의 특징을 보이지만, 그 다음 단계에서는 유산취득세 방식의 특징이 나타난다.

1단계: 피상속인의 총 상속재산에 기초공제를 적용한 후 과세표준을 산출한다.

2단계: 법정상속비율로 과세표준을 분배하고 각 상속인에 대해 상속세액을 산출한다.

3단계: 모든 상속인의 상속세액을 합산한 총 상속세액 합계액에 실제 상속받

은 재산가액 비율을 적용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세액을 다시 산출한다.
4단계: 각 상속인에 해당되는 세액공제 (배우자세액공제, 미성년자세액공제, 장애인세액공제)를 적용하여 각 상속인의 총 부담세액을 산출한다.

2. 세율체계

우리나라의 상속공제와 증여공제는 서로 상이하게 설계되어 있지만, <표 2>에 제시된 동일한 세율체계를 적용한다. 미국도 우리나라처럼 상속인 또는 수증인에 따라 세율체계를 달리 적용하지 않는다. 반면, 독일, 프랑스, 일본은 피상속인·증여자과 상속인·수증인 간의 친족관계가 가까운 정도에 따라 상속·증여세의 세율체계가 달라진다. 독일과 프랑스는 상속세율과 증여세율 모두 친족 간 거리에 따라 다르고, 일본은 증여세율만 다르다.

주요국의 세율체계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나라처럼 친족 간 관계와 상관없이 동일한 세율체계를 적용하는 미국의 상속세와 증여세 세율체계는 12단계의 초과누진세율구조를 가진다. 최저세율은 18%이고 최고세율은 40%이다.

<표 7> 미국의 상속·증여세 세율체계

과세표준(달러)	세율(%)	누진공제액(달러)
10,000 이하	18	-
10,000 ~ 20,000 이하	20	1,800
20,000 ~ 40,000 이하	22	3,800
40,000 ~ 60,000 이하	24	8,200
60,000 ~ 80,000 이하	26	13,000
80,000 ~ 100,000 이하	28	18,200
100,000 ~ 150,000 이하	30	23,800
150,000 ~ 250,000 이하	32	38,800
250,000 ~ 500,000 이하	34	70,800
500,000 ~ 750,000 이하	37	155,800
750,000 ~ 1,000,000 이하	39	248,300
1,000,000 초과	40	345,800

자료: IBFD Tax Knowledge Centre (2020) 를 토대로 저자 작성.

독일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상속세와 증여세가 동일한 세율체계를 갖는다. 다만, 독일의 상속·증여세는 과세 집단을 크게 3개의 집단으로 구분하여 세율체계를 적용한다. 과세 1집단에는 배우자·파트너 및 직계비속, 과세 2집단에는 형제 및 자매 등이, 그리고 과세 3집단은 그 외 가족들이 포함된다. 한편 직계존속인 부모 및 조부모는 상속의 경우에는 과세 1집단에, 증여의 경우에는 과세 2집단으로 분류된다. 동일한 과세표준 구간에 대해 과세 1집단이 가장 낮은 세율을 적용받고 친족관계가 멀어질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다. 과세 1집단의 최고법정한계세율은 30%이지만, 과세 3집단의 경우에는 50%로 20%p가 차이가 난다.

〈표 8〉 독일의 과세집단

그룹	내용
과세 1집단	배우자·등록된 파트너(civil partners), 자녀·의붓자식(stepchildren), 손자·손녀, 증손자·증손녀(상속의 경우, 부모 및 조부모가 과세 1그룹에 추가적으로 포함됨)
과세 2집단	형제·자매, 삼촌·이모, 조카, 양부모, 이혼한 배우자 (증여의 경우, 부모 및 조부모가 과세 2그룹에 추가적으로 포함됨)
과세 3집단	기타가족(양가부모, 양가족 등 포함)

자료: IBFD Tax Knowledge Centre (2020).

〈표 9〉 독일의 상속·증여세의 세율체계

과세표준(유로)	세율(%)		
	과세 1그룹	과세 2그룹	과세 3그룹
75,000 이하	7	15	30
75,000 ~ 300,000 이하	11	20	30
300,000 ~ 600,000 이하	15	25	30
600,000 ~ 6,000,000 이하	19	30	30
6,000,000 ~ 13,000,000 이하	23	35	50
13,000,000 ~ 26,000,000 이하	27	40	50
26,000,000 초과	30	43	50

자료: IBFD Tax Knowledge Centre (2020).

프랑스 역시 독일과 유사하게 과세집단을 직계존속, 형제 및 자매, 기타 가족으로 구분한다. 하지만 프랑스는 독일과 달리 과세표준 구간과 세율 모두 친족

관계의 정도에 따라 다르게 적용한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한 경우에는 5~45%의 7단계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한다. 형제 및 자매로부터 상속한 경우에는 35~45%의 2단계 초과누진세율로 세율구조가 앞의 경우보다 단순화되지만 동일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한 경우보다 더 높거나 같은 세율이 적용된다. 기타 가족의 경우에는 4촌을 기준으로 4촌 이내의 친족으로부터 상속한 경우에는 55%의 세율을, 그리고 5촌 이상의 친족으로부터 상속한 경우에는 60%의 세율을 적용한다.

〈표 10〉 프랑스의 상속·증여세의 세율체계

과세표준 (유로)	세율(%)		과세표준 (유로)	세율(%)		
	배우자	직계 존속		형제 자매	4촌 이내	5촌 이상
8,072 이하	5	5	24,430 이하	35	55	60
8,072 ~ 12,109 이하	10	10				
12,109 ~ 15,932 이하		15				
15,932 ~ 31,865 이하						
31,865 ~ 552,324 이하	20	20	24,430 초과	45	55	60
552,324 ~ 902,838 이하	30	30				
902,838 ~ 1,805,677 이하	40	40				
1,805,677 초과	45	45				

자료: IBFD Tax Knowledge Centre (2020).

일본의 상속세제는 10~55%의 8단계 초과누진세율을 가진다. 증여세제 역시 상속세제와 동일한 10~55%의 초과누진세율을 가지지만, 모든 과세표준 구간에 대한 임계점이 상속세보다 낮다. 이는 동일한 과세표준에 대해 상속세율이 증여세율보다 같거나 낮음을 의미한다. 예컨대, 과세표준 1백만엔에 대해 상속세율과 증여세율은 10%로 동일하다. 하지만, 과세표준 5천만엔에 대한 상속세율은 20%이지만 증여세율은 최고세율인 55%가 적용된다. 증여세제의 경우 친족 간 거리에 따라 세율체계가 다르다. 친족 간 거리는 20세 이상 직계존속과 기타 친족 등으로 구분된다. 두 집단 모두 10~55%의 초과누진세율 구조를 가지지만, 동일한 과세표준에 대해 직계존속 증여에 대한 증여세율이 그렇지 않은 경우의

증여세율보다 같거나 낮다. 이는 직계존속 증여의 세율체계가 세 부담 관점에서 기타 친족 등의 경우보다 더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표 11〉 일본의 상속세 세율체계

과세표준(천엔)	세율(%)	누적공제(천엔)
10,000 이하	10	-
10,000 ~ 30,000 이하	15	500
30,000 ~ 50,000 이하	20	2,000
50,000 ~ 100,000 이하	30	7,000
100,000 ~ 200,000 이하	40	17,000
200,000 ~ 300,000 이하	45	27,000
300,000 ~ 600,000 이하	50	42,000
600,000 초과	55	72,000

자료: IBFD Tax Knowledge Centre (2020).

〈표 12〉 일본의 증여세 세율체계

과세표준 (천엔)	20세 이상 직계존속		20세 이상 기타 가족 등	
	세율(%)	누적공제(천엔)	세율(%)	누적공제(천엔)
2,000 이하	10	-	10	-
2,000 ~ 3,000 이하	15	500	15	500
3,000 ~ 4,000 이하			20	2,000
4,000 ~ 6,000 이하	20	2,000	30	7,000
6,000 ~ 10,000 이하	30	7,000	40	17,000
10,000 ~ 15,000 이하	40	17,000	45	27,000
15,000 ~ 30,000 이하	45	27,000	50	42,000
30,000 ~ 45,000 이하	50	42,000	55	72,000
45,000 초과	55	72,000		

자료: IBFD Tax Knowledge Centre (2020).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주요국의 상속·증여세 최고법정한계세율은 30~60%의 범위에 있다. 프랑스의 경우 5촌 이상의 친족에게 자산을 이전할 경우 최고법정한계세율이 60%이다. 배우자 및 직계존속에 대한 자산이전을 기준으로 독일의 최고법정한계세율이 30%로 가장 낮으며, 일본의 최고법정한계세율이 55%로 가장 높다.

〈표 13〉 주요국의 상속·증여세 최고법정한계세율

국가	세율(%)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	3촌	4촌	5촌 이상
한국	50				
미국	40				
독일	30	43	50		
프랑스	45		55		60
일본	55				

자료: IBFD Tax Knowledge Centre(2020).

3. 공제제도

주요국의 상속세와 증여세의 공제제도는 공통적으로 기초공제, 인적공제, 기타공제로 구분할 수 있다. 또한, 특정 국가에만 존재하는 공제제도가 존재한다. 미국은 기부금공제가 존재하여 자선단체, 공익단체 등에 기부한 금액은 상속·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또한, 2019년 기준으로 수증자 1인당 연간 15,000달러(본인 및 배우자가 각각 증여하는 경우 30,000달러)까지는 증여금액을 공제한다. 이때, 수증자가 여러 명이라 하더라도 각 수증자에게 수증자 1인당 공제금액을 적용한다. 인적공제는 배우자공제만 있으며 배우자에게 이전되는 상속 및 증여재산 전액을 공제한다. 미국은 다른 국가와 달리 상속세와 증여세를 통합하여 운영하며, 통합세액공제 제도가 존재한다. 이는 상속세액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그 공제액은 2019년 기준으로 1,140만달러이다. 이를 원화로 환산하면 약 133억 원⁴⁾으로 미국의 상속세 부담은 극소수의 상당한 고액의 자산을 상속한 경우에만 발생하도록 설계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이 공제액은 물가에 연동되어 매년 조정되는 것이 특징이다.

독일의 경우 상속세와 증여세의 공제제도가 동일하다. 또한, 세율체계와 마찬가지로 피상속인과 상속인 간의 관계가 가까울수록 공제금액이 커 세부담이 작다. 〈표 14〉에 제시된 것처럼 공제금액 크기는 배우자, 자녀, 손자 및 손녀 등의

4) 2019년 매매기준 평균 원달러환율인 1,165.65원 적용(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주요국 통화의 대원화 환율 통계자료, <http://ecos.bok.or.kr/>, 접속일: 2020. 9. 4.).

순으로 나타난다. 독일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기부금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는다. 또한, 인적공제와 더불어 배우자와 자녀 등의 경우에는 특별생계비 공제 혜택을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다. 배우자의 경우 특별생계비로 256,000유로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 자녀의 경우 연령에 따라 10,300~52,000유로를 공제받을 수 있다. 이처럼 독일의 상속·증여세 부담은 친족 간 거리에 따라 달라진다. 하지만, 상속세와 증여세의 공제제도가 동일해 공제제도로 인한 상속과 증여에 대한 세부담 격차는 발생하지 않는다.

〈표 14〉 독일의 인적공제

상속인/수증자	공제액(유로)
배우자·등록된 파트너(civil partners)	500,000
자녀·의붓자식(stepchildren)	400,000
손자·손녀	200,000
그 밖의 과세 1그룹	100,000
과세 2그룹	20,000
과세 3그룹	20,000

자료: IBFD Tax Knowledge Centre (2020).

〈표 15〉 독일의 특별생계비공제

상속인/수증자	공제액 (유로)	
배우자·등록된 파트너(civil partners)	256,000	
자녀·의붓자식(stepchildren)	5세 이하	52,000
	6세~10세	41,000
	11세~15세	30,700
	21세~27세	20,500
	16세~20세	10,300

자료: IBFD Tax Knowledge Centre (2020).

프랑스에서 상속세와 증여세의 인적공제는 배우자공제를 제외하고 모두 동일하다. 배우자 간 상속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는다. 하지만, 증여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되며, 80,724 유로의 배우자공제를 받는다. 상속 및 증여공제는 친족 간 거리가 가까울수록 공제금액이 크다. 프랑스는 자녀, 손자녀, 증손자녀

등에게 현금을 증여하고 증여자가 80세 이하인 경우, 인적공제와 더불어 추가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때, 공제금액은 수증자 1인당 31,865유로이다. 프랑스는 배우자의 경우 상속세 부담이 증여세 부담보다 작지만, 그 외 일반적인 자산이전의 경우에는 상속세와 증여세 부담이 동일하다. 다만, 손자녀와 증손자녀에 대한 이전자산에 대해서는 증여세 부담이 상속세의 경우보다 낮다.

〈표 16〉 프랑스의 상속·증여공제

상속인·수증인	상속공제(유로)	증여공제(유로)
배우자	전액	80,724
직계존비속(부모·자식)	100,000	100,000
형제·자매	15,932	15,932
조카	7,967	7,967
장애인	159,325	159,325
손자녀	-	31,865
증손자녀	-	5,310
기타	1,594	-

자료: IBFD Tax Knowledge Centre (2020).

일본은 공공기관, 비영리단체 등에 기부한 금액과 일정 규모 이하의 생명보험금 및 퇴직금은 과세하지 않는다. 상속의 경우 인적공제가 세액공제의 형태로 이루어진다. 최종 결정된 각 상속인의 상속세액에 배우자세액공제, 미성년자세액공제, 장애인세액공제가 적용되며, 그 금액은 〈표 17〉에 제시된 바와 같다. 한편, 부동산을 상속하는 경우 3천만엔을 기본적으로 공제받고 법정상속인 1인당 6백만엔을 추가적으로 공제받는다.

〈표 17〉 일본의 상속세 인적공제

상속인	세액공제액
배우자	총 상속세액 × [(법정상속분과 1억 6,000만엔 중 높은 금액)과 실제 취득한 상속재산 중 낮은 금액] / 총 과세대상 상속재산가액
미성년자 (20세 미만)	10만엔 × {20세까지의 연수(또는 20-상속인 나이)}
장애인	10만엔(중증 장애인인 경우에는 20만엔) × (85-상속인 나이)

자료: IBFD Tax Knowledge Centre (2020).

일본의 증여세는 기초공제, 주택취득자금공제, 교육자금공제 등이 있다. 증여세는 배우자공제가 특별히 없는 반면, 매년 기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초공제액은 매년 110만엔이다. 20세 이상 배우자로부터 거주주택 또는 거주주택 취득 목적으로 자금을 이전받은 경우 일회성으로 최대 2,000만엔을 추가로 공제한다. 20세 이상인 수증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주택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경우 공제금액은 2020년 4월 1일 이후 기준으로 500만엔이며, 에너지절약주택은 1,000만엔이다. 부가가치세가 10%로 인상될 경우 일반주택에 대한 공제금액은 1,000만엔으로 상향조정되고 에너지절약주택의 경우에는 1,500만엔으로 상향조정된다. 30세 미만의 부양가족에게 교육자금(학교 등록금 등)을 증여한 경우에는 공제금액이 1,500만엔이다.

〈표 18〉 일본의 증여세 특별공제

연도	공제액(천엔)	
	일반주택	에너지절약주택
2016년 1월 1일 ~ 2020년 3월 31일 (일반주택의 경우에는 2019년 4월 1일부터임)	7,000 (25,000)	12,000 (30,000)
2020년 4월 1일 ~ 2021년 3월 31일	5,000 (10,000)	10,000 (15,000)
2021년 4월 1일 ~ 2021년 12월 31일	3,000 (7,000)	3,000 (12,000)

주: 괄호안은 부가가치세가 10%로 인상된 경우 적용되는 공제액임.

자료: IBFD Tax Knowledge Centre(2020).

일본은 상속세 정산과세제도를 도입하여 부모의 부가 자녀에게 잘 이전되도록 유도하는 방향으로 공제제도가 설계되어 있다. 상속세 정산과세제도는 일정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증여자가 선택할 수 있는 과세이연제도로 증여 시 저율로 과세하고 상속 시 이연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다. 여기서 일정조건이란 60세 이상 부모는 20세 이상 자녀 또는 손자녀에게 자산을 증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상속세 정산과세제도는 (1) 증여자가 증여재산가액에서 2,500만엔을 공제한 후 20%의 단일세율로 증여세를 납부하고, (2) 상속 시 증여재산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과세하되 미리 납부된 증여세액은 상속세액에서 공제하는 제

도이다.

4. 증여재산 합산기간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요국은 과거의 일정기간동안 증여한 재산을 모두 합산하여 증여세를 부과하거나 또는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일반적으로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면 증여재산 합산기간이 길수록 상속·증여세 부담이 클 것이다. 예컨대, 증여재산 합산기간이 우리나라와 같이 10년인 경우, 모든 조건이 동일한 상황에서 총 10억원을 매년 일정금액씩 10년 동안 나누어 증여한 경우와 20년 동안 나누어 증여한 경우의 세부담은 상이하다. 전자의 경우는 10억원의 증여재산가액 전체에 대해 증여세를 한 번 납부한 것과 같고, 후자의 경우는 5억원의 증여재산가액에 대해 두 번의 증여세를 납부한 것과 같은데, 누진적인 과세체계 하에서는 전자보다 후자의 세부담이 낮다. 증여재산 합산기간은 국가별로 차이가 있다. <표 19>에 나타난 것처럼 미국과 독일은 평생 증여한 재산을 모두 상속재산에 합산한다. 프랑스는 증여재산 합산기간이 15년이다. 일본은 증여재산 합산기간이 3년으로 가장 짧다. 우리나라는 10년으로 일본보다는 길지만 그 외 다른 국가들보다는 짧다.

〈표 19〉 주요국의 증여재산 합산기간

국가	증여재산 합산기간
한국	10년
미국	평생
독일	평생
프랑스	15년
일본	3년

자료: IBFD Tax Knowledge Centre (2020).

IV. 상속 및 증여의 세부담 격차 분석

본 연구의 주요 대상 국가는 OECD 평균보다 GDP 및 총 조세수입 대비 상속·증여 세수의 비중이 높은 국가들이다. 분석 대상 국가 중 2018년 기준 GDP 대비 상속·증여 세수 비중은 프랑스가 0.68%로 가장 높고, 우리나라는 0.41%로 프랑스 다음으로 높으며, 미국이 0.14%로 가장 낮다. 총 조세수입 대비 상속·증여세 비중은 우리나라가 1.45%로 가장 높고, 독일이 0.53%로 가장 낮다. 다만, 이 두 지표는 상속·증여세 부담에 대한 대리변수로 활용되기도 하는데, GDP와 총 조세수입이 총 이전자산가액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산이전에 대한 세부담 지표로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표 20〉 2018년 기준 주요국의 상속·증여 세수 비중

국가	GDP 대비(%)	총 조세수입 ¹⁾ 대비(%)
한국	0.41	1.45
미국	0.14	0.57
독일	0.20	0.53
프랑스	0.68	1.32
일본	0.41	1.30
OECD 평균	0.14	0.36

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세수를 포함한 비중이며 2018년도 자료가 없는 경우 2017년도 자료를 사용함.

자료: OECD, Revenue Statistics - Comparative tables, 2020.

주요국의 상속·증여세 부담을 정확하게 비교하기 위해서는 주요국의 과세자료를 수집하고, 수집된 자료를 사용하여 세수입을 이전된 자산가액으로 나누어 실효세율을 계산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상속세와 증여세의 실효세율 산출에 적합한 자료가 국가별로 존재하지 않는다. 주요국의 과세자료가 확보된다고 하더라도 과세자료에는 신고의무가 없는 자산이전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상속과 증여에 대한 전체 실효세율을 대변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본 연구는 모의실험 분석 방법을 사용하여 상속세제와 증여세제 간 차이에 따른 세부담을 비교하는데

초점을 둔다. 여기서 모의실험 분석이란 동일한 이전자산가액에 대해 자산이전 상황에 따라 설정된 시나리오별로 제Ⅱ장과 제Ⅲ장에서 설명한 국가별 상속·증여세제를 적용하여 실효세율을 산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세부담 격차 분석을 실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세부담 비교를 위해 일시적 자산이전과 지속적 자산이전으로 구분하여 분석한다. 일시적 자산이전은 일정 규모의 자산이 한 번에 이전되는 것을 의미한다. 예컨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한 자산이전이나 주택구입자금을 위한 증여가 여기에 해당한다. 지속적 자산이전은 일정 규모의 자산이 일정 기간에 걸쳐 주기적으로 자산이 이전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부모가 자녀에게 정기적으로 지원해 주는 자금이 여기에 해당한다. 일시적 자산이전과 지속적 자산이전을 구분하는 이유는 (1) 매년 일정 금액의 증여를 공제해주는 국가가 있고, (2) 증여재산 합산기간이 국가별로 다르기 때문이다. 이러한 국가별 제도의 차이는 동일한 규모의 자산이전이라도 자산이전 기간에 따라 공제규모가 달라져 세부담에 차이를 발생시킨다.

〈표 21〉 세부담 비교에 적용한 환율

국가	구매력평가환율	
	1미국달러당 자국화폐 비율	1,000원당 자국화폐 비율
한국	850.2999원	1,000원
미국	1.0000미국달러	1.1761미국달러
독일	0.7417유로	0.8723유로
프랑스	0.7941유로	0.8869유로
일본	103.3672엔	121.5656엔

주: 1. 환율은 2019년 기준임.

2. 구매력평가환율은 각 국의 GDP를 비교하기 위해 사용하는 환율임(Purchasing Power Parities for GDP).

자료: OECD. Stat (<https://stats.oecd.org/>).

한편, 주요국의 상속 및 증여세 부담을 비교하기 위해서 공통된 화폐단위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며, 어떤 환율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세부담 분석결과가 다를

수 있다. 본 연구는 구매력평가환율(purchasing power parties)을 이용하여 각 국가의 세부담을 비교한다. 이 구매력평가환율은 주로 국가 간 GDP 수준을 비교하기 위해 사용하는 환율로 각 국가의 생활수준이 화폐의 교환비율에 반영되는 장점을 가진다.

1. 일시적 자산이전에 대한 세부담 분석

일시적 자산이전 상황에서 과세방식, 세율체계, 공제제도가 상속·증여세 부담 격차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총 3가지 상황을 고려한다. 첫째, 자녀공제의 세부담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피상속인·증여자가 아버지이고 상속인·수증자가 자녀인 경우를 가정한다. 둘째, 배우자공제와 자녀공제의 세부담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피상속인·증여자가 아버지이고 상속인·수증자가 배우자와 자녀인 경우를 가정한다. 셋째, 우리나라의 경우 주요 국가들과 달리 아버지와 어머니를 동일인으로 간주하여 증여세 공제를 적용하므로, 피상속인·수증자가 아버지와 어머니 2명이고 상속인·수증자는 자녀인 경우를 가정하여 이런 제도적 특징이 세부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본다. 또한, 유산취득세와 유산세 방식의 세부담 차이는 자녀 수에 따라 달라진다. 따라서 앞서 제시된 각 상황에 대해 자녀 1명, 자녀 2명, 자녀 3명에게 자산을 이정한 경우를 추가하여 상속·증여세 부담 격차를 추정한다. 본 연구에서 가정한 상황은 <표 22>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22> 자산이전 상황 가정

자산이전 상황	상속인·수증자 중 자녀 수		
	자녀 1명	자녀 2명	자녀 3명
아버지가 자녀에게	상황 1	상황 2	상황 3
아버지가 배우자와 자녀에게	상황 4	상황 5	상황 6
아버지와 어머니가 자녀에게	상황 7	상황 8	상황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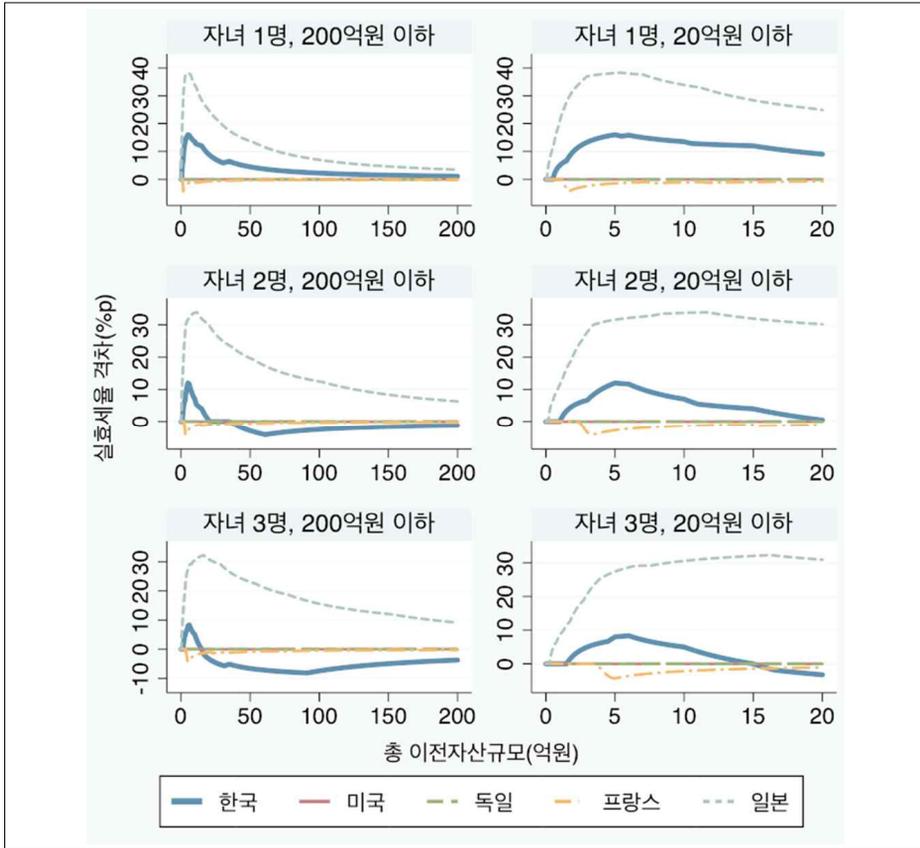
1) 아버지가 자녀에게 자산이전

〈그림 1〉은 〈상황 1〉~〈상황 3〉에 대해 총 이전자산가액이 증가할수록 상속과 증여에 대한 세부담 격차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보여준다. 〈그림 1〉의 실효세율 격차는 [증여세 실효세율 - 상속세 실효세율]을 의미하며, 여기서 실효세율은 세부담을 이전자산 금액으로 나눈 값을 의미한다. 만약 실효세율 격차가 0보다 크다면, 이는 동일한 이전자산가액에 대해 증여세 부담이 상속세 부담보다 더 높음을 의미한다.

〈그림 1〉에 나타난 것처럼 독일과 미국은 실효세율 격차가 0이다. 이는 독일과 미국의 경우 상속세와 증여세의 과세체계가 동일하게 설계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프랑스는 이전자산 20억원 이하 구간에서 실효세율 격차가 0보다 작은 구간이 존재해, 이전자산가액이 작을 경우 세부담 관점에서 증여세가 상속세보다 더 유리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현금 증여의 경우 증여공제와 함께 추가적으로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전자산가액이 증가할수록 실효세율 격차는 0에 가까워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이전자산가액이 증가할수록 이전자산가액에서 차지하는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부담 격차가 작아지기 때문이다. 독일, 미국, 프랑스는 상속세와 증여세의 과세방식이 모두 유산취득세이기 때문에 자녀수가 실효세율 격차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 다만, 프랑스의 경우 증여세의 공제제도가 상속세의 경우보다 유리하게 설계된 부분이 있으며 이는 자녀수가 증가할수록 과세시작점에 영향을 준다. 〈그림 1〉에서 이전자산 20억원 이하 구간을 살펴보면, 자녀수가 증가할수록 실효세율 격차가 음(-)의 값이 나타나는 시점이 늦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전자산가액에 따른 한국과 일본의 실효세율 격차는 다른 주요국과 비교하여 다른 모습을 보인다. 부모가 자녀 1명에게 이전한 경우를 먼저 살펴보면, 한국과 일본의 실효세율 격차는 0보다 크게 나타나며, 그 격차는 이전자산가액이 증가할수록 작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일본의 실효세율 격차는 한국의 경우보다 더 크게 나타난다.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이유는 (1) 증여세의 세율체계가 세부담 측면에서 상속세보다 불리하고, (2) 일시적으로 이전되는 일반 자산의 경

〈그림 1〉 일시적 자산이전에 대한 국가별 실효세율 격차:
아버지가 자녀에게 자산을 이전한 경우



우 기초공제 외에 다른 공제혜택이 없기 때문이다. 한국의 경우에는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체계는 동일하지만 상속세는 증여세와 달리 일괄공제제도가 있어 최소 5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부모가 자녀 2-3명에게 이전한 경우를 살펴보면, 〈그림 1〉에 나타난 것처럼 한국의 경우 자녀수가 증가할수록 증여세 부담이 낮아져 이전자산가액 증가에 따른 실효세율 격차가 음(-)의 값을 갖는 구간이 나타난다. 또한, 〈그림 1〉에서 이전자산 20억 이하의 경우를 살펴보면, 자녀수가 증가할수록 실효세율 격차가 음(-)의 값을 갖는 시작점이 더 빠르게 나타난다. 이는 상속세의 일괄공제제도로 인해 이전자산가액이 낮은 구간에서는 증여세 부담이 크게 나타나지만, 증여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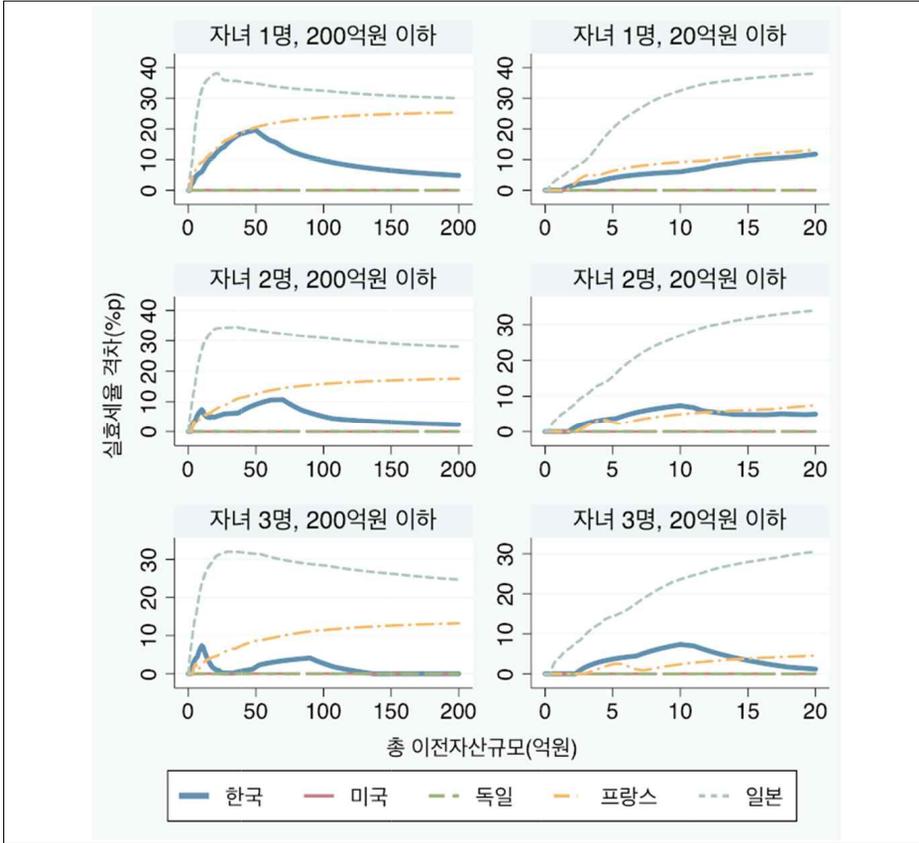
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과세하므로 자녀수가 증가할수록 세부담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본의 경우 상속세와 증여세 모두 유산취득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녀수의 증가가 이전자산가액에 따른 실효세율 격차에 미치는 영향이 한국과 비교하여 크지 않다.

2) 아버지가 배우자와 자녀에게 자산이전

〈상황 1〉~〈상황 3〉에 대한 실효세율 격차는 배우자공제를 반영하지 못한다. 배우자공제가 세부담 격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다음의 〈상황 4〉~〈상황 6〉 분석결과를 살펴보자. 이때, 배우자와 자녀는 법정 상속지분만큼 상속 또는 증여받는다고 가정한다.

미국과 독일은 상속세와 증여세가 동일한 배우자공제와 자녀공제를 가지기 때문에 실효세율 격차는 항상 0이다. 한국과 일본은 상속세의 배우자공제가 세부담 측면에서 증여세의 경우보다 더 유리하도록 설계하였다. 한국의 상속세 배우자공제 규모는 증여세보다 더 크다. 일본은 상속세에만 배우자공제를 적용한다. 따라서 배우자공제를 고려한 실효세율 격차는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더 크게 나타난다. 하지만 한국은 일본과 달리 상속세와 증여세의 과세방식 차이로 인해 자녀수가 증가할수록 실효세율 격차가 감소한다. 프랑스는 배우자에게 상속한 자산에 대해서는 세부담이 발생하지 않지만 증여한 자산에 대해서는 세부담이 발생한다. 따라서 배우자공제를 고려하지 않은 경우 프랑스의 실효세율 격차는 작았지만, 배우자공제를 고려한 경우 실효세율 격차는 양(+)의 값이 나타나고, 이전 자산가액이 증가할수록 그 격차는 일정수준까지 완만하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인다. 또한, 프랑스는 모든 조건이 동일한 상황에서 자녀수가 증가할수록 실효세율 격차수준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자녀수 증가에 따른 세부담 감소속도가 상속세보다 증여세에서 더 빠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증여공제가 상속공제보다 세부담 관점에서 다소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림 2〉 일시적 자산이전에 대한 국가별 실효세율 격차:
아버지가 배우자와 자녀에게 자산을 이전한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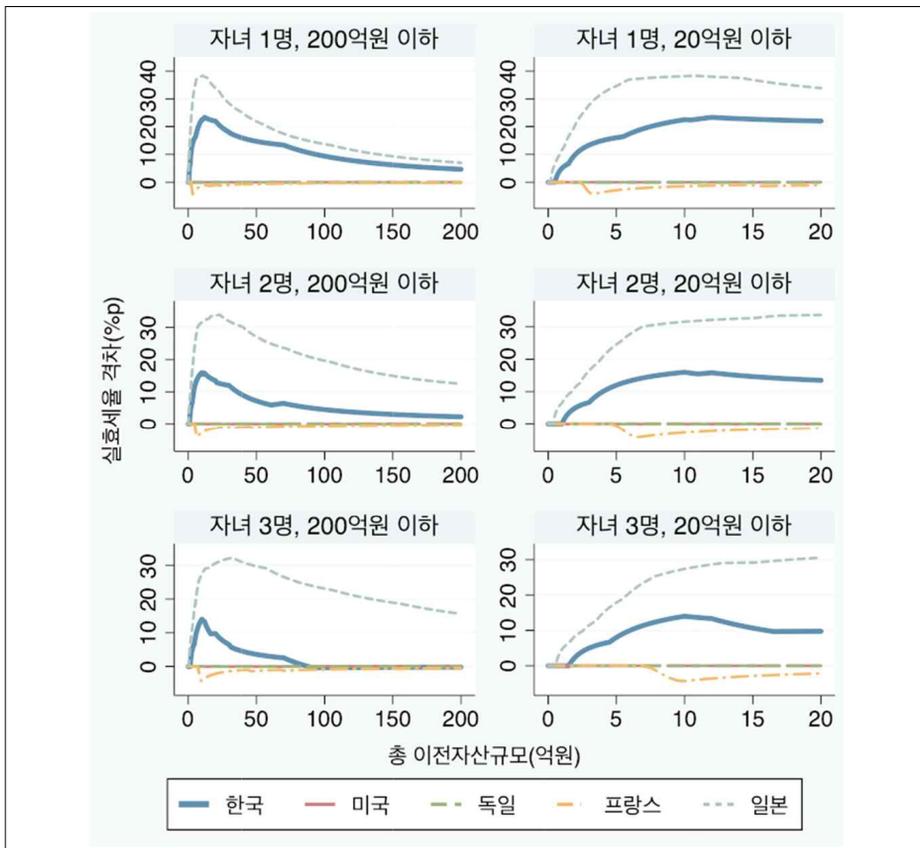


3) 아버지와 어머니가 자녀에게 자산이전

한국은 다른 주요국과 달리 증여세 과세방식 및 공제제도를 적용할 때 아버지와 어머니를 동일인으로 간주한다. 이는 세부담 관점에서 증여세가 더 불리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를 분석하기 위해 다음의 〈상황 7〉~〈상황 9〉 분석 결과를 살펴보자. 이때, 아버지와 어머니는 총 이전자산 금액의 50%씩 자녀(들)에게 이전한다고 가정한다. 〈그림 3〉에 제시된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한국의 실효세율 격차가 〈상황 1〉~〈상황 3〉의 경우와 비교하여 더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상속세의 경우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각각 상속을 받기 때문에

아버지로부터 상속을 받는 경우보다 상속인이 받는 공제규모는 더 커졌지만, 증여세의 경우 직계존속 집단에 속하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동일인으로 간주하여 증여공제를 한 번만 적용하였기 때문이다. 한국의 경우처럼 증여세 공제를 적용하는 국가는 없으므로 주요국의 실효세율 격차 분석결과는 동일하게 나타난다.

〈그림 3〉 일시적 자산이전에 대한 국가별 실효세율 격차:
아버지와 어머니가 자녀에게 자산을 이전한 경우



2. 지속적 자산이전에 대한 세부담 분석

부모가 자녀에게 자산을 이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일시적으로 자산을 이전하는 경우도 있고, 정기적으로 자산을 이전하는 경우도 있다. 예컨대, 부

모가 자녀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큰 자산이전이 발생할 수도 있고 부모가 사망하면서 상속재산을 자녀들에게 남길 수도 있다. 부모는 자녀의 삶의 질을 고려하여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상대적으로 작은 금액을 빈번하게 이전할 수 있다. 자산이전 기간(일시적, 정기적)과 상관없이 실효세율 격차분석 결과가 동일하기 위해서는 지속적 증여 공제제도가 부재하고, 증여재산 합산기간이 평생이어야 한다. 지속적 증여 공제제도가 존재할수록, 증여재산 합산기간이 짧을수록 지속적 자산이전에 대한 증여세 부담은 일시적 자산이전의 경우와 비교하여 낮아진다.

본 연구는 정기적 증여공제제도와 증여재산 합산과세제도를 고려하여 실효세율 격차분석을 다시 수행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표 23>에 제시된 것처럼 자산이전 기간과 자녀수에 따라 총 9개의 시나리오를 설정하였다.

〈표 23〉 자산이전 상황 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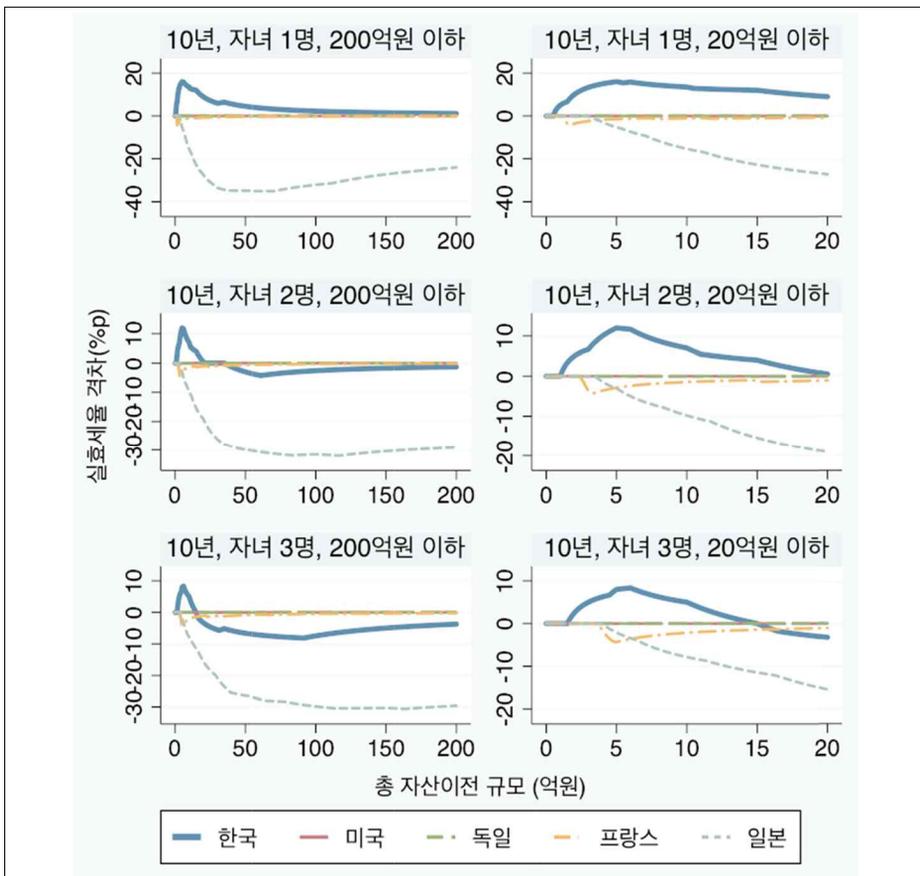
자산이전 상황	자산이전간	자녀 수		
		자녀 1명	자녀 2명	자녀 3명
아버지가 자녀에게	10년간 매년 자산이전	상황 1	상황 2	상황 3
	15년간 매년 자산이전	상황 4	상황 5	상황 6
	20년간 매년 자산이전	상황 7	상황 8	상황 9

〈그림 1〉은 아버지가 자녀에게 자산을 일시적으로 이전한 상황에 대하여 상속세와 증여세의 실효세율 격차를 분석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그림 4〉~〈그림 6〉은 동일한 자산이전 상황에서 지속적 증여공제제도와 증여재산 합산과세제도가 실효세율 격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준다. 본 연구는 〈그림 1〉의 실효세율 격차 분석결과를 〈그림 4〉~〈그림 6〉의 경우와 비교·분석하여 자산이전형태가 실효세율 격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본다.

〈그림 1〉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일본과 한국에서는 동일한 규모의 자산을 이전할 경우 상속이 세부담 측면에서 증여보다 더 유리하게 나타났다. 한국에 대한 〈그림 4〉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지속적 자산이전에 대한 실효세율 격차는 일시적 자산이전의 경우와 동일하게 나타났다. 이는 한국의 증여재산 합산기간이 10

년이고 지속적 증여 공제제도가 부재하기 때문이다. 반면, 일본의 경우에는 지속적 자산이전에 대한 실효세율 격차가 음(-)의 값이 나타나며, 이는 증여가 세부담 관점에서 상속보다 더 유리함을 보여준다. 이는 일본의 경우 지속적 증여 공제제도가 존재하고 증여재산 합산기간이 3년으로 증여기간보다 더 짧기 때문이다. 일시적 자산이전에 대한 실효세율 격차를 보면 일본의 증여세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세부담 측면에서 상속세보다 더 불리하게 설계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지속적 자산이전을 고려할 경우 일본의 실효세율 격차는 한국의 경우와 비교하여 크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독일과 프랑스는 지속적 증여 공제제도가 존재하지 않고 증여재산 합산기간이 각각 평생, 15년이므로 자산이전 형태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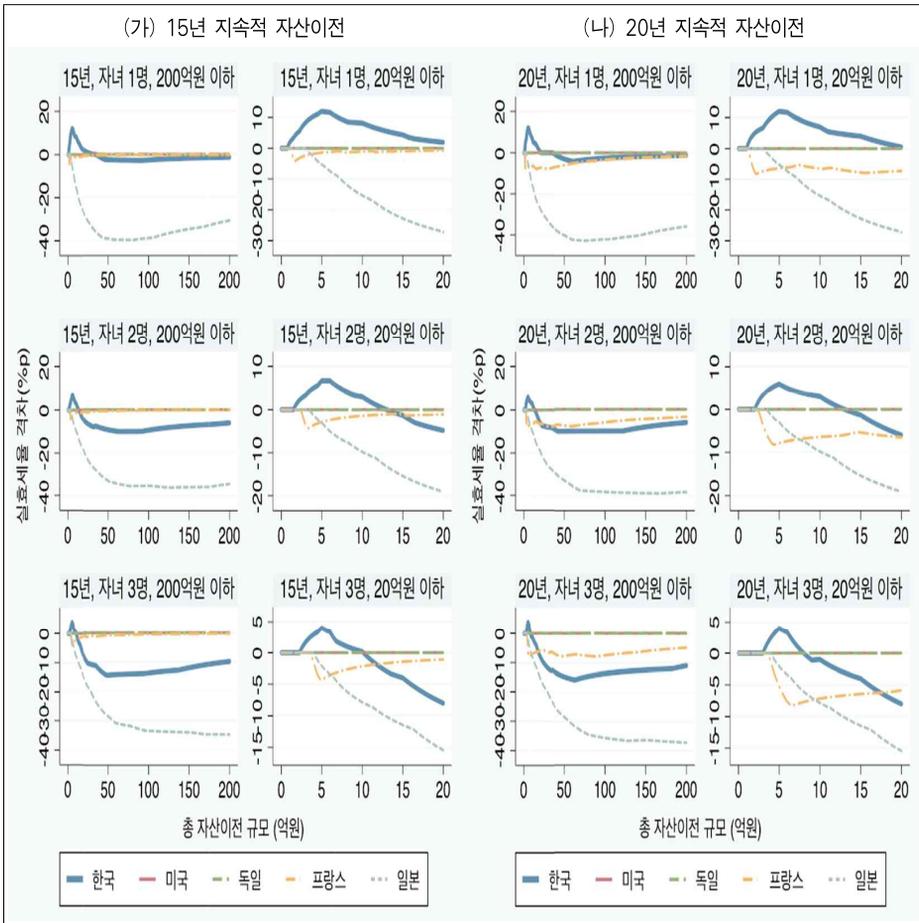
(그림 4) 10년 지속적 자산이전에 대한 국가별 실효세율 격차



다른 실효세율 격차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미국은 지속적 증여 공제제도가 존재하지만, 상속세와 증여세가 통합적으로 운영되고 증여재산 합산기간이 평생이므로 자산이전 방식이 실효세율 격차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결과적으로 독일과 미국은 자산이전 기간이 실효세율 격차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그림 5-(가)〉는 자산이전 기간이 10년에서 15년으로 증가한 상황에 대한 시나리오 분석결과를 보여준다. 〈그림 5-(가)〉에 나타난 것처럼, 한국과 일본의 경우 실효세율 격차가 양(+)의 값을 갖는 구간에서는 그 값이 줄어들고 음(-)의 값을 갖는 구간에서는 그 값이 절댓값 기준으로 더 커진다. 이는 한국과 일본의

〈그림 5〉 지속적 자산이전에 대한 국가별 실효세율 격차



경우 증여재산 합산기간이 자산이전 기간보다 짧게 되므로 증여세 부담이 <그림 4>의 경우보다 더 낮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프랑스의 경우에는 증여재산 합산기간과 자산이전 기간이 동일하므로 <그림 4>에 제시된 실효세율 격차 분석결과가 동일하게 유지된다. <그림 5-(나)>는 자산이전 기간이 15년에서 20년으로 증가한 상황에 대한 시나리오 분석결과를 보여준다. <그림 5-(나)>의 분석결과를 <그림 5-(가)>의 경우와 비교하여 한국과 일본의 증여세 부담이 더욱 낮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프랑스의 실효세율 격차는 증여세 부담이 낮아지는 방향으로 변화하였으며, 이는 증여재산 합산기간이 15년으로 자산이전기간 20년보다 짧아졌기 때문이다.

V.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는 다양한 자산이전 상황을 고려하여 주요국의 상속세와 증여세의 실효세율 격차를 비교·분석하였다.⁵⁾ 본 연구결과는 한국의 경우 동일한 이전자산 가액에 대해 증여세 부담이 상속세의 경우보다 더 높게 나타남을 보여준다. 특히, 한국의 증여세 실효세율은 자녀수가 낮을수록 총자산이전 규모가 낮을수록 상속세의 경우보다 더 큰 경향이 있다. 예컨대 자녀수가 1명이면서 자산이전기간이 10년인 경우 대체로 자산이전형태와 상관없이 증여세 실효세율이 상속세의 경우보다 크게 나타났다. 하지만 자녀수가 증가하거나 자산이전기간이 길어질수록 증여세 실효세율이 감소하여 상속세의 경우보다 낮은 구간이 뚜렷하게 나타났

5) 본 연구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국가별로 동일한 이전자산 금액에 대해 상속세와 증여세의 실효세율을 산출하고 이를 비교·분석하였다. 하지만 이전자산 금액이 동일하더라도 이 금액이 나타내는 부(wealth)의 가치는 국가별로 다를 수 있다. 예컨대, 가난한 국가에서 10억원 가치의 주택은 부유한 국가의 경우와 비교하여 상당히 고가주택으로 여겨질 수 있다. 이를 분석에 반영하는 것은 중요하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현재 신뢰성 있는 자산에 대한 자료의 부족으로 이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 향후 가구당 순자산의 중위값 등의 자료를 활용하여 상대적인 부의 크기(예: 중위값의 5배, 10배 등)에 따라 상속세와 증여세의 실효세율이 국가별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분석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이는 후속연구 과제로 남겨둔다.

다. 현재 경제사회 여건을 보면, 한국의 현재 평균 자녀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2000년대 이후에는 평균 2명 이하로 나타나고 있다(유정균·김두섭, 2018). 이는 평균적으로 증여가 세부담 관점에서 상속보다 더 불리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 한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은 상속세와 증여세가 세부담 측면에서 동일하거나 증여세가 상속세보다 더 유리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일본의 경우 일시적 자산이전 상황만을 고려할 경우 증여세가 상속세보다 세부담 관점에서 훨씬 더 불리하게 설계되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일본의 경우에도 지속적인 증여에 대한 공제제도와 증여재산 합산과세제도를 반영할 경우 증여세 부담이 크게 낮아진다.

이처럼 주요국과 다르게 설계된 한국의 상속·증여세제는 부모의 자산이전 의사결정을 왜곡하여 부모세대의 부가 자녀세대로 원활하게 이전되는 것을 저해한다. 이는 사중손실(deadweight loss)을 야기하므로 조세제도의 효율성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오종현·최승문·강성훈(2016)은 부의 재분배 측면에서도 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한 이론적 분석을 통해 상속보다 증여에 대한 세부담이 높은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을 보여주었다. 자산이전에 대한 동기로 상속의 경우 우발적 동기가 작용할 수 있는 반면, 증여는 이타적 동기가 더 크게 작용한다. 이타적 동기가 크게 작용할 경우 소득수준이 낮은 자녀에게 부의 재분배가 더 크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재분배 측면에서는 상속보다 증여가 더 효과적이다. 이와 같은 오종현·최승문·강성훈(2016)의 결과는 이타적 동기를 강화시킨다는 관점에서 증여로 인한 세부담이 최소한 상속에 대한 세부담보다 높지 않도록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의미한다.

상속세와 증여세를 세부담 관점에서 유사하도록 설계하기 위해서는 과세방식과 공제제도를 서로 일관되게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가장 먼저 고려할 수 있는 방안은 상속세의 과세방식을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것이다. 상속세가 중요한 이유는 상속세가 부의 집중을 억제하고 기회의 형평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상속세의 과세방식으로 유산세보다 유산취득세의 타당성이 더 인정된다. 또한, 상속인이 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이 세부담의 형평성 관점에서 타당하다. 피상속인이 상속

인 2명에게 각각 20억원을 상속한 경우와 상속인 1명에게 20억원을 상속한 경우를 생각해보자. 상속세는 누진구조를 가지기 때문에 각 상속인이 20억원을 상속받았다 하더라도 전자의 세부담이 후자의 경우보다 더 높게 나타난다. 이는 형평성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유산취득세 방식에서는 자녀수가 많을수록 세부담이 낮아지기 때문에 부의 분산을 유도할 수 있다.

상속·증여세제가 세부담이 유사하도록 개편되기 위해서는 상속세 과세방식 개편과 함께 상속·증여공제의 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 상속공제 개편은 크게 두 가지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첫 번째 방안은 일괄공제를 폐지하는 방안이다. 일괄공제는 총 상속재산가액에 적용되는 것으로 유산취득세 방식에는 부합되지 않는다. 따라서 유산취득세 방식을 도입할 경우 일괄공제를 폐지해야 한다. 두 번째 방안은 일괄공제를 유지하면서 상속공제금액을 조정하는 방안이다. 일괄공제를 유지한다는 것은 과세방식을 유산세 방식과 유산취득세 방식을 혼합하여 사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경우 상속세와 증여세 부담 격차를 감안하여 각 상속인에게 적용되는 상속공제금액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증여공제 개편의 경우, 공제금액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증여공제 확대방안으로 (1)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공제금액을 상향조정하거나 (2) 미국, 일본 등의 경우처럼 매년 일정 금액을 공제해주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다. 오종현·최승문·강성훈(2016)의 설문조사에서는 실제로 증여자산에 대해 증여세를 신고하였는지를 물어보고 있지 않지만 현실에서 주거비용이나 결혼자금을 부모로부터 지원받으면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고 있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증여공제 확대가 증여세제의 현실화 관점에서 의미가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증여공제를 확대할 경우 공제대상이 아닌 이전자산에 대해서는 세원포착을 위한 국세청의 제도적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 강성훈, 『상속증여세제 개선방향에 대한 공청회』,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7.
- 김낙년, 「우리나라 소득불평등의 추이와 국제비교」, 『사회과학연구』, 제25집 제2호, 2018, pp. 175-196.
- 김병일, 「상속세 및 증여세제의 개편방안: 최명근 선생의 정책제안을 중심으로」, 『조세연구』, 제17집 제3호, 2017, pp. 37-99.
- 김광현, 「우리나라의 상속세 공제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세무회계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001 권 제1호, 한국세무회계학회, 2001, pp. 69-89.
- 김진, 「상속증여세의 현황 및 경제적 효과: 세대간 자산이전 모형을 중심으로」, 『재정포럼』, 2005년 9월호(제111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05, pp. 6-31.
- 박용일, 「상속세 및 증여세 부담의 변화가 증여동기에 미치는 영향」, 『산업경제연구』, 제12집 제6호, 1999, pp. 309-322.
- 서정우, 「주요국의 상속세 과세제도 비교 및 시사점: 인적물적공제 및 세율제도를 중심으로」, 『조세연구』, 2018, pp. 137-168.
- 오종현·최승문·강성훈, 『상속증여세가 세대간 부의 축적과 소비에 미치는 영향』, 연구보고서 16-05,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6.
- 유정관·김두섭, 「초저출산의 고착화와 출산간격의 변화」, 『한국의 사회동향 2018』, 통계개발원, 2018, pp. 37-47.
- 정유석, 「상속 및 증여세 폐지와 자본이득세로의 전환 타당성에 관한 연구」, 『국회회계연구』, 제27집 제27호, 2009, pp. 163-184.
- 한상국, 『상속증여세제의 개편에 관한 해외사례 연구』, 연구용역보고서, 국회예산정책처, 2013.
- 홍민기, 「최상위 소득비중의 장기추세」, 『산업노동연구』, 제21집 제1호, 2015, pp. 1-34.
- IBFD Tax Knowledge Centre, Global Individual Tax Handbook 2020, Global Tax Series, International Bureau of Fiscal Documentation, 2020.

A Study on the Difference in the Tax Burden of Inheritance and Gift

Sung Hoon Kang* · Jonghyeon Oh**

Abstract

This study uses simulation analysis to see how much the difference in the tax burden of inheritance and gift in Korea is as compared to other countries. In this study, we consider two types of wealth transfer to measure the tax burden: (1) one-time wealth transfer and (2) repeated wealth transfer for a certain period of time. We find that the difference in the tax burden is quite large in Japan and Korea in the case of one-time wealth transfer. However, the gift tax burden in Japan is sharply decreased when gifts are made for a certain period of time. Our results show that the gift tax in Korea is designed to be more disadvantageous than the inheritance tax in terms of the tax burden as compared to other countries. This tax system is more likely to distort people's wealth transfer decisions, and thereby reducing social welfare. Therefore, it is crucial to reform the inheritance and gift tax in the way of reducing the distortion of wealth transfer decisions.

Key Words: inheritance tax, gift tax, difference in the tax burden of inheritance and gift, simulation analysis

JEL Code: H20, H21

* First Author,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Policy Studies, Hanyang University, e-mail: shkang7@hanyang.ac.kr

** Corresponding Author, Research Fellow, Korea Institute for Public Finance, e-mail: jhoh@kipf.re.kr